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13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점차 멸실되어가는 강화지역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관한 재정립을 통하여 한반도 역사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 나.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재단의 정관에 목적 및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역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등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기 및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2.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

3. 역사문화유산의 교육·보급

4. 남북 역사문화 교류

5. 국내외 관계 기관과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대표

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2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화고려역사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부금, 사업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개시 3개월 전 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자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민법 -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57조(이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제5조(임원 등) - 제6조(이사회)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4(파견근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민법 】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12조(기금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3년도 예산 중 인천문화재단에 설치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보조금 2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7억원의 추가 편성을 전제하여 2013년도 총 예산을 산정함.
- 인건비는 2013년 센터의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정함.
- 재단설립을 위한 총 시비는 10억원을 출연('11년 1억원, '13년 9억원)

나. 추계 결과

- 2013년도 출연금 등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3년도 예산	주요내역
합 계	900	
인건비	220	· 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당 등 - 연구직렬 4인 · 행정직렬 3인
(시비보조)	220	
사업비	150	· 교육 홍보 사업에 중점 - 홈페이지 및 CI 제작 - 강화역사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 - 강화역사강좌 - 강도시대사 학술회의 - 심도기행답사
(시비보조)	(150)	
운영비	130	
(시비보조)	(130)	
기금	400	- 재단설립 자본금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3 년)	2차년도 (‘14 년)	3차년도 (‘15 년)	계
세입	출연금	900			900
	소계	900			900
세출	경상운영비	350			350
	사 업 비	150			150
	기금적립금	400			400
	소계	900			9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계	900			900
	일반회계	900			9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타					

※ 2013년도 예산 중 인천문화재단에 설치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출연금 2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재단설립을 위해 7억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함.

※ 재단설립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안정적 재정규모를 500억원으로 설정(2011년 기획연구과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 방안 연구/인천발전연구원 자료)하였으나, 市 정책조정회의 결과(2011. 1. 28) 재정규모를 300억원으로 조정하고 시비 10억원과 민자 등 290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재단설립을 위한 총 시비는 10억원을 출연(‘11년 1억원, ’13년 9억원)하고 재단출범 후 사업영역과 민간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